

제3절 단체의 선거운동 등

1. 단체의 선거운동



법규요약

법 §87, §108의③

- 단체는 선거법에서 제한·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.
 - 다만, 법 제59조에 따른 문자메시지, 인터넷 홈페이지,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함.

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

- 국가·지방자치단체
 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(한국은행 포함)
 - 「농업협동조합법」·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·「산림조합법」·「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
 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(적용범위)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
 - 향우회·종친회·동창회, 산악회 등 동호인회,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
 -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·새마을운동협의회·한국자유총연맹
 -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
 -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(이하 이 항목에서 '후보자등'이라 함.)이 임원으로 있거나,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,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·단체
 -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·단체
-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(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)는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.

-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정당·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. 이 경우 지지하는 정당·후보자를 함께 공표하여야 함.

☞ 벌칙조항 : §255①

☞ 사례 예시

가. 지지·반대 후보자 결정·공표

○ 할 수 있는 사례

- 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그 단체들의 공동기구가 내부회원만을 대상으로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행위
 - ➔ 통상적인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범위를 넘어 일반 선거구민을 선거인단 또는 국민 배심원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지지후보를 결정하거나, 단체 간 공동기구를 새로이 결성하여 지지하기로 결정한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위반
- 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지지후보를 결정한 후 자체 홈페이지에 지지 후보의 이름과 지역구 등을 표시하여 알리는 팝업(Pop-up)을 게시하거나 이를 클릭하면 지지후보의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조치하는 행위
- ☑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후보자의 이력과 정책공약 홍보, 지지·선전 등 일체의 행위 없이 단순히 투표를 통해 지지할 후보자를 정하는 행위
- ☑ 관계법령 및 「조합규약」의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 직무와 관련하여 개최된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회의 등 집회에서 통상의 의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토의하고 이를 결정하는 행위
- ☑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기자회견·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지지하는 후보자를 공표하는 행위

❌ 할 수 없는 사례

- ❑ 단체가 일반선거구민을 단일화 선거인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지지할 단일후보자를 결정하는 행위
- ❑ 정당과 시민단체 또는 일반시민들이 공동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행위
- ❑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한 후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·절차 및 통지방법 등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·시설물·집회 등을 이용하여 알리는 행위
 -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기관지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대부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·선전·반대하는 것인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위반되는 인쇄물 등에 해당
 - 통상적·정기적인 발행주기·수량·면수·배부범위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93조 및 제95조에 위반되는 탈법적인 인쇄물 내지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에 해당
- ❑ 단체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인 회원들의 모임에서 정견을 발표하게 하고 소속 회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후보자를 선출하는 행위

나. 단체의 내부 활동

⊙ 할 수 있는 사례

- ☑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·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에게 알리는 행위
- ☑ 옥내 등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·반대의 내부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속 구성원만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

❌ 할 수 없는 사례

- ❑ 단체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·반대하는 내용이나 지지·반대를 유도하는 내용을 부가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
- ❑ 노동조합 사무실에 기존부터 설치되어 있는 전화 외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별도로 전화를 증설하여 전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
제6장 선거법 관련 금지사례

- ☒ 노동조합이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행위(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4도27 판결)

다. 단체의 대외 활동

🕒 할 수 있는 사례

- 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벽보 · 선거공보에 지지 · 추천사 게재, 방송연설과 공개장소 연설 · 대담 지원연설, 전화 · 전자우편 ·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을 이용한 지지 권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
- ☑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선거공약을 철회 또는 채택하여 줄 것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건의 · 요구하는 행위
 - ➔ 다만,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그 선거공약을 반대하거나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거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법 제107조 또는 제254조에, 그리고 집회가 선거기간 중에도 계속될 경우 법 제103조에도 위반되며, 단체가 건의한 공약자료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채택한 사실을 신문광고하는 행위도 위반

☒ 할 수 없는 사례

- ☒ 정당 ·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 ·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표시물 · 광고물 등을 거리나 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의 외벽 · 차량에 게시하거나 단체회원 등의 옷에 새겨 이를 착용하는 행위
- ☒ 단체가 신문 · 방송광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광고(배너, 텍스트 등)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- ☒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을 사업장내 또는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(부산고법 2004. 11. 17. 선고 2004노787 판결)
- ☒ 사전에 일반선거구민에게 지지선언 관련 기자회견 개최사실과 장소를 고지하고 그 장소에 연단 · 확성기를 설치 · 사용하거나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인쇄물 배부, 동영상 상영 등 기자회견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- ☒ 경선캠프측 또는 특정인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선언을 권유 · 유도하는 행위

라.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

㉠ 할 수 있는 사례

- ☑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·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거나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
 - ➔ 다만, 지지·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유권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아니 될 것임.

㉡ 할 수 없는 사례

- ☒ 공무원노동조합과 그 소속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행위
- ☒ 공무원노동조합이 불법선거운동신고센터 개설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행위
- ☒ 공무원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,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(대법원 2006. 6. 27. 선고 2005도213 판결)
- ☒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그 명의를 나타내어 찬성·반대하는 정당의 명칭을 유추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현수막·인쇄물을 게시·배부하는 등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

마. 기타 선거운동

㉠ 할 수 있는 사례

- ☑ 노동조합사무소를 통상의 임차료를 받고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의 선거사무소·선거연락소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
- ☑ 「정치자금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후원회가 선거법과 「정치자금법」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원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 - ➔ 이 경우 후원회의 모집금품을 선거운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할 수 없음.

제6장 선거법상 제언·금지사례

❌ 할 수 없는 사례

- ❌ 노동조합의 기구·조직 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별도의 선거대책기구,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를 설치하는 행위
- 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·반대하거나 정당·후보자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애드벌룬·상징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
 - 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행위는 모두 불가
- ❌ 단체가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의 공약평가발표회를 개최하는 행위

2. 낙천·낙선운동

📖 법규요약 법 §58, §87

-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·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나,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는 범위에서는 선거운동이 되어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됨.
-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·반대하거나 지지·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, 이러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은 선거운동기간 내여야 하므로 그 행위 시점이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이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위법하며, 선거운동의 방법에 있어서도 선거법 제7장 선거운동에 관한 관련 규정 등에 의해 금지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음.

🖥️ 사례 예시

⊙ 할 수 있는 사례

- 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(이하 "단체"라 함.)가 낙천·낙선대상자를 결정하고 기관지·소식지·내부문서·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·안내 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는 행위
- 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·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·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(SNS·모바일메신저 등 포함)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

❌ 할 수 없는 사례

- ❌ 단체가 낙천·낙선후보자 명단을 게재한 홍보물이나 별도의 유인물 등을 제작하여 거리집회,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고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서명운동을 하며, 낙천·낙선운동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배포·부착하는 행위
- ❌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낙천·낙선대상자 명단을 공표하는 행위
- ❌ 낙천·낙선대상자 명단을 별도의 인쇄물·시설물·광고 등의 방법으로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
- ❌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낙천·낙선대상자를 공천한 정당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
- ❌ 단체가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거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낙선대상자 명단 등을 전송하는 행위
- ❌ 낙선대상자 명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행위
- ❌ 특정 정당·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피켓·현수막·인쇄물·광고·집회·서명운동·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

3.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

 **법규요약** 법 §87②, §89①

1. 사조직 설치 금지

- 주체 및 기간 : 누구든지 상시 금지
- 금지행위 :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(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. 이하 이 항목에서 같음.)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·동우회·향우회·산악회·조기축구회,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

2.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

- 주체 및 기간 : 누구든지 상시 금지
- 금지행위 : 법 제61조 제1항, 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,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· 후원회 · 연구소 · 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· 단체 ·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· 단체 ·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
- 예 외 : (예비)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른 후원회는 예외로 함.

☞ 벌칙조항 : §255①

☞ 사례 예시

☞ 할 수 있는 사례

- ☑ 선거와 관련 없는 순수한 목적의 연구소 등 개설행위
- ☑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사무실 개설행위
 - 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간판 등을 설치하는 것 외에는 선거준비를 위한 사무소에 간판 등을 설치할 수 없음.
- ☑ 각종 단체 등이 선거와 관련 없이 당초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이나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
 - ➔ 당초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이라 하더라도 각종 선전물에 후보(예정)자의 명의를 표시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 행위는 할 수 없음.
- ☑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집에서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전화를 이용하여 전화홍보를 하는 행위
 - ➔ 다만,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집에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를 증설하고 증설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
- ☑ 선거운동기간 중 단체의 회원(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)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하여 그 사무소에 설치된 전화 ·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
→ 다만, 단체의 사무소에 별도의 전화·컴퓨터 등을 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

- ☑ 후보자가 되려는 산악회의 회원이 순수하게 등산 목적의 산악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행위

→ 다만,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산악회를 설립하거나 설립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반

- ☑ 정당의 사무소에 설치하는 선거대책기구를 선거기간 전에 설치·운영하는 행위

❌ 할 수 없는 사례

- ❌ 정당과 시민단체 또는 일반시민들이 공동지지 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행위

- ❌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 등을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변질시키거나 그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

- ❌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·선전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약속·권유하기 위하여 위촉장·신분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행위

- ❌ 단체 등이 그 구성원에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견이나 업적을 교육시키거나 홍보하는 행위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지지에 동원하는 행위

- ❌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체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동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지휘하고 선거운동 연습장소 등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(대전지법 1996. 8. 8. 선고 96고합26 판결)

- ❌ 비록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있다고 할지라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공간을 벗어나 별도로 구획된 시설에 추가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한 행위(대전고법 2006. 10. 13. 선고 2006노344 판결)

- ❌ 아르바이트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선거사무소가 아닌 장소에 상근시키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의 홍보전화를 하도록 한 행위(대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6도8747 판결)

- ❌ 연구소를 설립한 후 300여 명의 후원조직을 만들고, 인지도와 지지도 확대를 위한 선거 관련 회의 개최, 입당원서 전달, 각종 단체 행사 일정 파악, 후보자가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를 하도록 한 행위(대구지법 2010. 5. 19. 선고 2010고합91 판결)

제6장 선거법 개정·권치사례

4. 후보자의 팬클럽 등 활동

법규요약 법 §87, §103③

- 향우회·종친회·동창회, 산악회 등 동호인회,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인 모임(후보자의 팬클럽 포함)은 그 기관·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.
-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(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, 이하 이 항목에서 같음.)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, 동우회, 향우회, 산악회, 조기축구회,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.
-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·종친회·동창회·단합대회 또는 야유회,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.

☞ 벌칙조항 : §255①, §256③

사례 예시

가. 조직 결성·운영

○ 할 수 있는 사례

- 선거와 무관하게 친목도모나 학술·취미 활동 등을 위하여 팬클럽을 결성하는 행위
- 팬클럽이 통상의 활동·운영을 위한 내부조직을 두는 행위
-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한 내부활동을 위하여 연대조직을 결성하는 행위
-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
-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를 지원하거나 당헌·당규에서 정한 경선운동을 하기 위하여 팬클럽을 결성하는 행위

❌ 할 수 없는 사례

- ❌ 후보자를 위하여 팬클럽·선거추진위원회·후원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기관·단체·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·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·단체·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
- ❌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거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팬클럽을 결성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
- ❌ 팬클럽이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홍보·선전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내부조직(대선거획팀, 온라인홍보팀, 정책홍보팀 등)을 두거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
- ❌ 팬클럽이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·설치하거나 그 팬클럽 운영경비를 회원이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모금하는 행위
 - ➔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하게 설립된 팬클럽인 경우에도 그 운영경비를 모금하면서 저금통에 후보자의 성명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팬클럽 명칭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거나 모금과정에서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법 제90조, 제254조에 위반
- ❌ 팬클럽의 정관·규약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·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임을 규정하는 행위
- ❌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팬클럽 내부에 경선대책본부 등 경선운동기구를 설치하는 행위

나. 온라인(ON-LINE) 활동

🔍 할 수 있는 사례

- ✅ 팬클럽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당 후보자의 통상적인 연설내용이나 활동상황·동정 등을 게시하는 행위
- ✅ 팬클럽 회원(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, 팬클럽 또는 팬클럽 대표자의 명의로 게재하는 행위 제외)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
 - ➔ 다만,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전자우편 발송 불가

❌ 할 수 없는 사례

- ❑ 팬클럽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,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(SNS 포함)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·전송하는 행위

다. 오프라인(OFF-LINE) 활동

👉 할 수 있는 사례

- ☑ 팬클럽이 축구나 등산에 관심이 있는 일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차원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체육행사나 산행을 하는 행위
 - ➔ 다만, 통상적인 친목도모나 취미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팬클럽 활동을 대외적으로 선전·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회원들을 동원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그 모임에 동원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법 제87조, 제89조, 제103조, 제115조, 제254조 등에 위반
- ☑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그 설립목적에 맞게 학술·취미활동을 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게 하는 행위
 - ➔ 다만, 회원이 아닌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참석시켜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그 양태에 따라 법 제254조에 위반
- ☑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·사진 또는 그 명칭·성명을 유추하는 내용 없이 팬클럽 회원이 피켓·인쇄물을 활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
 - ➔ 다만, (사전)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는 위반
- ☑ 팬클럽의 임원 등이 후보자의 이름이 표기된 팬클럽의 명칭을 게재한 명함을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
 - ➔ 다만,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살포(특정장소에 비치하는 방법 포함)하는 등 통상적인 수교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배부하는 경우에는 위반

❌ 할 수 없는 사례

- ❑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·전진대회 등 집회 또는 선거 지원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하는 행위
- ❑ 팬클럽이 출정식·발대식 개최와 관련하여 일반 선거구민을 동원하거나 일반 선거구민 대상 초청장 발송, 신문광고 게재 및 현수막과 벽보를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

- ☒ 특정 후보자의 당선·낙선운동을 하는 팬클럽의 회원들에게 팬클럽이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행위
- ☒ 팬클럽이 그 이름을 밝혀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기타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
- ☒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·선전구호 등을 연호하거나 행진하는 행위
- ☒ 팬클럽이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간판·현판·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
- ☒ 팬클럽이 법 제112조 제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외에 불우이웃 돕기, 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
- ☒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회원들을 동원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그 모임에 동원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